차별은 위법입니다!

연방 법률은 귀하가 이 포스터를 읽고 있는 사무실이나 기업 또는 조직의 일부 혹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귀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차별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the U.S. Department of Labor) 산하 인권센터 (The Civil Rights Center, 이하 'CRC')는 해당 법률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귀하가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거나 회사, 조직, 사무실의 종업원이거나 구직자, 또는 일반 대중이든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차별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접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권센터 (CR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 귀하의 권리
-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담당기관
- 첫째, 진정서에는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둘째, 진정서에는 귀하의 대리인이 귀하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셋째, 진정서에는 귀하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차별행위는 위법입니다

이 포스터 상단에 언급된 법률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래와 같은 차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 구직자, 지원자, 종업원, 일반 대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

- 인종
- (유색인종의) 색깔
- 출신국가
- --· ■ 종교
- 장애
- 정치성향 또는 신념
- 성별
- 연령

특히 고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

- 시민권 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
- (인력투자법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등과 같은) 특정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의 '금융지원 (financial assistance)'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별행위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는 경우:

- 이 업체나 조직, 또는 사무실의 프로그램이 귀하를 차별했거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차별한 경우
- 또는 귀하가 판단한 차별의 유형이 포스터에 기재된 목록의 내용과 같은 경우¹ 귀하는 해당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에 시한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별이 일어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인권센터(CRC)의 최고책임자(소장)만이 제출 시한 이후에도 귀하가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80일 이후에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의 지연 사유 및 허가 요청서를 인권센터(CRC)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곳은 본 포스터의 '인권센터(CRC) 주소'를 참고하십시오.

진정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까?

진정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귀하의 성명
- 귀하의 주소
- 귀하의 서명
- 귀하를 차별했거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귀하가 생각하는 업체나 조직, 사무실, 또는 프로그램의 이름 및 주소
- 귀하가 생각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짜
- 귀하가 생각하는 발생한 차별의 종류 (예: 인종, 성별, 장애, 연령 등)
- 증인을 포함하여 차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성명

또한 무슨 일이 발생했으며 왜 차별행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대리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변호사, 가족 구성원, 사회복지사, 노조 사무장, 또는 귀하가 자신의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지명한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귀하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¹목록은 '이런 종류의 차별은 위법입니다 (These types of discrimination are against the law)' 이하에 규정된 목록을 의미합니다 . 이 목록은 본 포스터의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정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아래의 두 곳 중 한 기관에 귀하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 정부 혹은 지역 담당기관. 주 정부 혹은 지역 담당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진정서 접수를 담당하는

주 정부 혹은 지역 담당기관의

주소 및 기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삽입할 것]

연방정부 산하 인권센터 (The Federal government's Civil Rights Center) 연방 인권센터(CRC)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U.S. Department of Labor

Civil Rights Center

200 Constitution Ave. NW

Room N4123

Washington, DC 20210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나 전자메일을 통해 인권센터(CRC)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202) 693-6500

텍스트전화 (TTY/TDD): (202) 693-6516

전자메일: <u>CivilRightsCenter@dol.gov</u>

인권센터(CRC) 홈페이지:

 $\underline{\text{http://www.dol.gov/oasam/programs/crc}}$

인권센터의 근무시간은 동부시간(Eastern Time) 기준으로 오전 9시 – 오후 5시입니다.

진정서에 특별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 인권센터(CRC)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음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본 포스터의 '진정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까?' 부분에 나와 있는 목록 상의 모든 정보를 저희 센터에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 센터의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진정서에 대한 조사 개시 전에 저희는 귀하께 진정서 양식을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주 정부나 지역 담당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특별한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귀하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지역 담당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귀하의 진정서에 대한 조사 개시 전에 귀하게 진정서 양식을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 지역담당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센터(CRC) 진정서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식을 인쇄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양식을 출력하십시오.

http://www.dol.gov/oasam/programs/crc/CIFmain.htm

-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식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인권센터의 진정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 o 인권센터(CRC)에 서면으로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터의 '인권센터(CRC) 주소'를 참고 하십시오.
 - o 귀하께서 이 포스터를 읽고 있는 업체, 조직, 사무실 등은 귀하에게 진정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